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“구의회 사무국장” 을 각각 “구의회 사무과장” 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위 입 사 무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	
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			
가.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	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	구 의 회 사무과장	
나. 의회내 별정직·임기제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	○ 지방자치법 제91조	구 의 회 사무과장	
다.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의 소내 전보	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	보건소장	
2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
가.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	○ 「약사법」 제20조제2항	보건소장	
나. 폐업·휴업·재개업신고	○ 같은 법 제22조		
다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 명령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개수 명령,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,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)	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 내지 제76조		
라.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	○ 같은 법 제41조 ○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2조		
마.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	○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2조		
바. 청문실시	○ 같은 법 제77조		
사. 과징금 부과·징수	○ 같은 법 제81조		
아.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같은 법 제98조		
자. 등록증 등의 갱신, 재발급	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		
차. 약국,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	○ 같은 법 제50조제1항		
카. 포상금 지급	○ 같은 법 제90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		
3.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
가.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, 변경신고, 폐업신고 등의 수리	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		보건소장
나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	○ 같은 법 제32조, 제34조 내지 제36조		
다. 청문 실시	○ 같은 법 제39조		
라. 과징금부과 및 징수	○ 같은 법 제38조		
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	○ 같은 법 제56조		
바.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	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		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사.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4.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가. 개설신고 나. 변경신고 다. 휴·폐업신고 라. 지도·감독(업무개시명령, 보고와 업무검사등, 시정명령등, 개설허가 취소 등) 마.. 청문실시 바. 과징금 부과·징수 사..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같은 법 제47조 ○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 ○ 같은 법 제33조제5항 ○ 같은 법 제40조제1항 ○ 같은 법 제59조제2항, 제61조, 제63조, 제64조 ○ 같은 법 제84조 ○ 같은 법 제67조 ○ 같은 법 제92조	보건소장
5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	○ 「의료법」 제35조	보건소장
6. 안마·접골·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. 안마시술소개설·변경신고·휴·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. 접골·침·구시술소개설·변경, 휴·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	○ 「의료법」 제82조 ○ 같은 법 제81조	보건소장
7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개설등록 나.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. 시정명령 사. 청문실시	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○ 같은 법 제13조 ○ 같은 법 제15조 ○ 같은 법 제24조 ○ 같은 법 제33조 ○ 같은 법 제23조 ○ 같은 법 제26조	보건소장
8.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. 개설등록 나.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..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. 시정명령 사. 청문실시	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○ 같은 법 제13조 ○ 같은 법 제15조 ○ 같은 법 제24조 ○ 같은 법 제33조 ○ 같은 법 제23조 ○ 같은 법 제26조	보건소장
9.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.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.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	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○ 같은 법 제34조 ○ 같은 법 제35조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라.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마.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 바.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 사. 구급차의 지도 감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같은 법 제35조의2 ○ 같은 법 제44조의2 ○ 같은 법 제45조 ○ 같은 법 제50조 	보건소장
10.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		
가.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(신고대상인 경우 폐쇄) 및 업무의 정지 나. 청문 다.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○ 같은 법 제56조 ○ 같은 법 제57조 	
11.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		
가. 신고 나. 시정명령, 업무정지명령, 지도·감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법 제16조 ○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○ 의료법 제16조, 제63조, 제64조 ○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	보건소장
12.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		
가.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 나.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, 재발급 다.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. 대마의 운반, 보관 등 마.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바.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.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 아. 출입, 검사와 수거 자.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.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. 청문의 실시 타.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. 과태료 부과 및 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 제6조 ○ 같은 법 제7조 ○ 같은 법 제8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○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○ 같은 법 제13조 ○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39조 ○ 같은 법 제41조 ○ 같은 법 제42조, 제43조 ○ 같은 법 제44조 ○ 같은 법 제45조 ○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○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	보건소장
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		
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약사법」 제45조 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나.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다. 의약품유통관리기준(KGSP)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 명령, 폐기명령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) 마. 청문 바. 허가증 등의 갱신, 재발급 사.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. 과태료부과 및 징수 자.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	○ 같은 법 제45조 ○ 같은 법 제47조 ○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, 제76조 ○ 같은 법 제77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 ○ 같은 법 제89조	
14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건소장
가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나. 휴업·폐업 및 재개신고 다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 명령, 폐기명령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) 라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마. 청문 바. 등록증 등의 갱신, 재발급 사.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. 과태료부과 및 징수	○ 「약사법」 제44조의2 ○ 같은 법 제44조의2 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, 제76조 ○ 같은 법 제76조의3 ○ 같은 법 제77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, 보건소장 또는 <u>구의회 사무국장</u>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의회 사무과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임사무) ①구청장이 동장, 보건소장 또는 <u>구의회 사무국장</u>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위임사무) ①----- <u>구의회 사무과장</u> ----- 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별표> 위임사무	<별표> 위임사무
사 무 명	사 무 명
근거법령	근거법령
수임기관	수임기관
<p>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</p> <p>가.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</p> <p>나. 의회내 별정직·<u>기능직·계약직</u> 공무원의 임용권</p> <p>다. 소속 공무원의 승급</p> <p>라. <u>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</u>의 소내 전보</p>	<p>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</p> <p>가.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</p> <p>나. 의회내 <u>별정직·임기제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"><삭 제></p> <p><u>다.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·임기제공무원 제외</u>의 소내 전보</p>
<p>○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</p> <p>○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</p> <p>○ 지방자치법 제83조</p> <p>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</p> <p>○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</p> <p>○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</p>	<p>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</p> <p>○ 지방자치법 제91조</p> <p>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</p>
<p>구의회 사무국장</p> <p>구의회 사무국장</p> <p>구의회 사무국장</p> <p>보건소장</p>	<p>구의회 사무과장</p> <p>구의회 사무과장</p> <p>보건소장</p>
<p>6. 약국업무</p> <p>가.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</p> <p>나. 폐업·휴업·재개업신고</p> <p>다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 명령, <u>폐기명령</u>, 개수명령, 관리</p>	<p>2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</p> <p>나. 폐업·휴업·재개업신고</p> <p>다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 명령 등, <u>회수폐기 및 공표명령</u></p>
<p>○ 「약사법」 제16조</p> <p>○ 동법 제20조</p> <p>○ 동법 제64조 내지 69조</p>	<p>○ 「약사법」 제20조제2항</p> <p>○ 같은 법 제22조</p> <p>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 내</p>
<p>보건소장</p>	<p>보건소장</p>

현행			개정안		
<별표> 위임사무			<별표> 위임사무		
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라. 삭제(2001.10.10) 마. 삭제(2001.10.10) 바. 삭제(2001.10.10) 사. 제조품목 신고 아. 제조업무 폐지 자. 청문실시 차. 과징금 처분 카. 과태료 부과·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법 제33조 ○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○ 동법 제69조의2 ○ 동법 제71조의 3 		등 개수명령,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,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라.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.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바. 청문실시 사. 과징금 부과징수 아. 과태료 부과징수 자.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차. 약국,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 승인 카. 포상금 지급	지 제76조 ○ 같은 법 제41조 ○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2조 ○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○ 같은 법 제77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 ○ 같은 법 제50조제1항 ○ 같은 법 제90조 ○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	
7. 의리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리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나.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폐기명령 등 마. 청문 바. 과징금부과 및 징수 사. 과태료부과 및 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리기기법」 제16조 ○ 「의리기기법」 제32조 ○ 의리기기법, 제28조 ○ 의리기기법, 제30조 ○ 「의리기기법」 제34조 ○ 「의리기기법」 제33조 ○ 「의리기기법」 제47조 	보건소장	3. 의리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리기기판매업 등의 신고, 변경신고,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<삭 제> <삭 제> 다. 청문 실시 라. 과징금부과 및 징수 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.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사.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	○ 「의리기기법」 제17조 ○ 같은 법 제32조, 제34조 내지 제36조 ○ 같은 법 제39조 ○ 같은 법 제38조 ○ 같은 법 제56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○ 같은 법 제47조	보건소장
8. 의료기관 업무(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)에 관한 사무 가. 개설신고 나. 변경신고 다. 휴·폐업신고 라. 지도·감독(업무개시명령, 보고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 제30조제3항 ○ 동법 제30조제6항 ○ 동법 제33조 ○ 동법 제49조 내지 	보건소장	4.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가. 개설신고 나. 변경신고 다. 휴·폐업신고 라. 지도·감독(업무개시명령, 보고와	○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 ○ 같은 법 제33조제5항 ○ 같은 법 제40조제1항 ○ 같은 법	보건소장

현행			개정안		
<별표> 위임사무			<별표> 위임사무		
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p>업무검사등, 시정명령등, 개설허가의 취소 등</p> <p>마. 의료부수신고 바. 청문실시 사. 과징금처분 아. 과태료 부과·징수</p> <p>9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</p> <p>10. 안마·접골·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. 안마시술소개설·변경신고·휴·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. 접골·침·구시술소개설·변경·휴·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</p> <p>11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개설등록 신고 나.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.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.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. 시정명령 사. 청문실시</p> <p>12.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. 치과기공소의 인정 나. 폐업 또는 인정사항의 변경신고</p> <p>다. 양수신고</p> <p>라. 감독(조사, 업무정지, 인정취소 등)</p> <p>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</p>	<p>제51조</p> <p>○ 동법 제37조 ○ 동법 제63조의2 ○ 동법 제53조의2 ○ 동법 제72조 ○ 「의료법」 제31조</p> <p>○ 「의료법」 제61조</p> <p>○ 동법 제60조</p> 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○ 동법 제13조 ○ 동법 제15조 ○ 동법 제24조 ○ 동법 제33조 ○ 동법 제23조 ○ 동법 제26조</p> 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5조</p>	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	<p>업무검사등, 시정명령등, 개설허가 취소 등</p> <p><삭 제> 마. 청문실시 바. 과징금 부과·징수 사. 과태료 부과·징수</p> <p>5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</p> <p>6. 안마·접골·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. 안마시술소개설·변경신고·휴·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. 접골·침·구시술소개설·변경·휴·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</p> <p>7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개설등록 나.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. 시정명령 사. 청문실시</p> <p>8.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. 개설등록 나.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</p> <p><삭 제> <삭 제></p> <p>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.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. 시정명령 사. 청문실시</p> <p>9.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.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.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라.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마.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</p>	<p>제59조제2항, 제61조, 제63조, 제64조</p> <p>○ 같은 법 제84조 ○ 같은 법 제67조 ○ 같은 법 제92조 ○ 「의료법」 제35조</p> <p>○ 「의료법」 제82조</p> <p>○ 같은 법 제81조</p> 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○ 같은 법 제13조 ○ 같은 법 제15조 ○ 같은 법 제24조 ○ 같은 법 제33조 ○ 같은 법 제23조 ○ 같은 법 제26조</p> 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</p> <p>○ 같은 법 제13조</p> <p>○ 같은 법 제15조 ○ 같은 법 제24조 ○ 같은 법 제33조 ○ 같은 법 제23조 ○ 같은 법 제26조</p> <p>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○ 같은 법 제34조 ○ 같은 법 제35조 ○ 같은 법 제35조의2 ○ 같은 법 제44조의2</p>	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

현행			개정안		
<별표> 위임사무			<별표> 위임사무		
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신설>			13.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<u>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</u> <u>나.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</u> <u>다. 의약품유통관리기준(KGSP)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</u> <u>라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명령, 폐기명령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)</u> <u>마. 청문</u> <u>바. 허가증 등의 갱신, 재발급</u> <u>사. 과징금부과 및 징수</u> <u>야. 과태료부과 및 징수</u> <u>자.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</u>	○「약사법」제45조 ○ 같은 법 제45조 ○ 같은 법 제47조 ○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62조 제7호관련 별표6 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, 제76조 ○ 같은 법 제77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 ○ 같은 법 제89조	보건소장
<신설>			14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<u>가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</u> <u>나. 휴업, 폐업 및 재개신고</u> <u>다. 지도·감독(보고와 검사 등, 업무개시명령, 폐기명령 등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, 사용중지명령 등,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)</u> <u>라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</u> <u>마. 청문</u> <u>바. 등록증 등의 갱신, 재발급</u> <u>사. 과징금부과 및 징수</u> <u>야. 과태료부과 및 징수</u>	○「약사법」제44조의2 ○ 같은 법 제44조의2 ○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, 제74조, 제76조 ○ 같은 법 제76조의3 ○ 같은 법 제77조 ○ 같은 법 제80조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7조 ○ 같은 법 제81조 ○ 같은 법 제98조	보건소장